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검 토 보 고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693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3
2. 제정안의 구성체계	8
3. 총괄적 검토	10
4. 조문별 검토	14
가. 목적(안 제1조)	14
나. 회계의 운용·관리(안 제2조)	15
다. 계정의 구분 등(안 제3조부터 제6조)	16
라. 차입금, 이월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	27
마. 부칙	28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희정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2. 제안이유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함. 이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의 목표가 5년마다 재설정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스포츠 단체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저출생 대응 예산에 포함되는 등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예산 집행이 있었음.

이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출 대상 사업을 일·가정양립균형, 돌봄 및 모자보건에 한정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리

· 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계정을 일·가정양립계정, 돌봄계정, 모자보건계정으로 분리함(안 제3조).

다. 일·가정양립계정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함(안 제4조).

라. 돌봄계정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돌봄 여건을 개선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안 제5조).

마. 모자보건계정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건강한 임신·출산 및 출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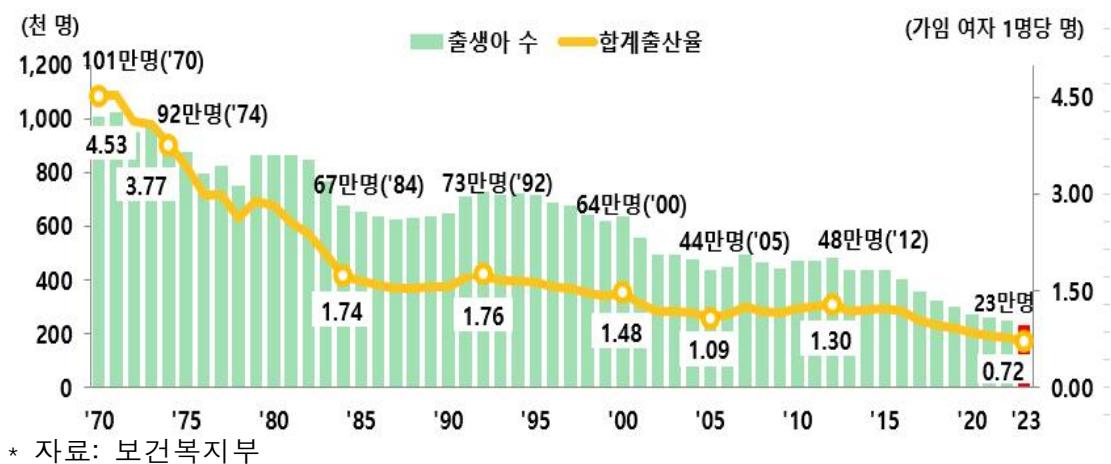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의 197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간 출생아 수를 보면, 101만명에서 23만명으로 77%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¹⁾ 역시 4.53명에서 0.7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1970년~2023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최근 5년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각 연도별 시행계획²⁾ 기준 2019년 32조 3천억원에서 2023년 47조원에 이르

1)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대체출산율 2.1 미만일 경우 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대체출산율이란, 한 국가가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출산율임.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기까지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추세를 반등시키고자 하였으나, 최근 5년간의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2,700여명에서 2023년 23만명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92명에서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저출생 예산 현황 >

(단위: 년, 조 원)

연 도	'19	'20	'21	'22	'23
예 산액	32.3	40.2	47.2	50.6	47.0

* 자료: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자료에서 인용)

<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

(단위: 천 명, %, 명, 가임 여자 1명당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생아 수		302.7	272.3	260.6	249.2	230.0
전년 대비	증 감	-24.1	-30.3	-11.8	-11.4	-19.2
	증 감 륜	-7.4	-10.0	-4.3	-4.4	-7.7
1일 평균 출생아 수		829	746	714	683	630
합계출산율		0.92	0.84	0.81	0.78	0.72

* 자료: 보건복지부(통계청 자료 인용)

□ 이러한 출생아 수의 급감은 향후 노동 인구 감소를 불러 일으켜 기업과 국가의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고령화의 심화에 따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 의료비와 연금 지출이 증가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연금제도나 복지 시스템의 유지에 필요한 사회보장비용의 납부를 부담하는 인구층을 감소시키고, 소비 시장의 축소로 인한 고용 감소 및 경제 활력 저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음.

□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생아 수의 반등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고 저출생 사태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분류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나,

어떤 사업이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효과의 직·간접성, 단기와 장기적 평가, 정책수혜자의 범위 등을 바라보는 정부 부처 또는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상이할 것임.

□ 그리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본위원회(2023.3.28.)를 통하여 저출생 대응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사업들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리과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업들은 25개에 이르며, 제외된 예산액은 2조 9,106억 원에 이름. 비교적 단순한 검토만으로도 이토록 거액의 예산사업이 타당성 측면에서 재검토 대상이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저출생 극복이라는 사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수

단의 선정과 예산의 투입을 결정하는 모델을 설계하는 일은 신중하게 여러 측면을 검토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시행계획 관리제외 대상과제 목록 >

(단위: 백만원)

번호	부처	과제명	2023년 예산
1	여가부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디지털 성범죄 방지)	3,783
2	방통위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3,177
3	교육부	기본적 교육비에 대한 공적영역 지원과 교육복지안전망 강화(교육급여, 교육복지안전망)	127,784
4	교육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고교학점제)	46,913
5	교육부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267,723
6	교육부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고졸 취업 학생 초기 안착)	102,000
7	교육부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연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407,000
8	교육부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연계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마이스터대학)	21,710
9	고용부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연계 (일·학습 병행 지원)	34,055
10	고용부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 과정 운영과 취업연계 (공동훈련센터)	25,000
11	고용부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핵심인력 양성, K-Digital Training)	416,260
12	고용부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구직 관련 지표개발)	-
13	산업부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AI융합형 혁신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9,000
14	문화부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신진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	9,191
15	교육부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400

번호	부처	과제명	2023년 예산
		(진로탐색학점제)	
16	중기부	청년 창업 지원(민간주도 기술창업 지원)	343,741
17	과기부	청년 창업 지원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12,280
18	문체부	청년 창업 지원(전통문화청년창업육성지원)	3,230
19	농림부	청년 창업 지원(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1,120
20	해수부	청년 창업 지원(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2,560
21	과기부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15,137
22	중기부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여성창업 지원)	3,556
23	중기부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여성전용 벤처펀드)	13,000
24	여가부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진출지원 확대 (진출 분야 다양화)	-
25	국방부	군인력 구조 개편(장교·부사관·군무원 인건비 증액분)	42,009
합계			2,910,629

* 자료: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자료에서 인용)

□ 제정안은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저출생 대응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들을 배제하고 검증된 사업들에 세출예산을 배정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에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설정됨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자체가 불확실하여 강한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보기 힘든 사업들이 저출생 관련 사업의 예산으로 포함되는 등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국가적 역량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 관련 예산을 독립된 영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안의 목적(안 제1조), 회계 운용·관리의 주체(안 제2조), 특별회계의 세 가지 계정(안 제3조)으로서 일·가정양립계정(안 제4조), 돌봄계정(안 제5조), 모자보건계정(안 제6조)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안 제7조)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임.

<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제2조	회계의 운용·관리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제3조	계정의 구분	• 특별회계를 일·가정양립계정, 돌봄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
제4조	일·가정양립계정의 세입·세출	• 세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 • 세출: 일·가정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제5조	돌봄계정의 세입·세출	• 세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 • 세출: 돌봄 여건을 개선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제6조	모자보건계정의 세입·세출	• 세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 • 세출: 건강한 임신·출산 및 출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제7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음
제8조	차입금	•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 차입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함
제9조	세출예산의 이월	•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
제11조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 허용
부칙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총괄적 검토

□ 특별회계는 단일회계주의 원칙³⁾의 예외로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연계함으로써 특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나, 과도하게 설립될 경우 재정의 칸막이 현상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심화, 유사기능의 중복 수행 가능성, 내부거래에 따른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해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⁴⁾에서는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법률로서 2024년 10월 기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등 총 18개의 법률⁵⁾이 있음.

3) 단일회계주의란 국가의 세입·세출을 하나의 회계로 통일하여 경리하는 원리를 말하며, ‘예산단일주의’ 또는 ‘회계통일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이는 국가 재정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4)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5) 「국가재정법」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삭제 <2021.12.21.>
4. 삭제 <2006.12.30>
5. 정부기업예산법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7. 삭제 <2021.12.21.>
8. 등기특별회계법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1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또한, 「국가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⁶⁾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 신설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제출한 특별회계 신설계획서를 동 법 제14조제2항제4호 (효과성) 및 제5호(세입·세출 연관성)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회에 저출생 대응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부처를 신설하려는 다수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⁷⁾,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13. 삭제 <2006.12.30>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6. 삭제 <2021.12. 21.>

17. 「환경정책기본법」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률 제18585호(2021. 12. 21.)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832호(2019. 12. 31.)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률 제19188호(2022. 12. 31.)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6)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안」(추경호의원안, 제1625호)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안 및 예산요구서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조정 및 심사하여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전심의제가 도입되므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신설은 이러한 입법 및 정부조직의 변화를 기초로 추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추경호의원안, 제1625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구위기대응정책”**이라 함은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이하 “저출생 관련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안 및 예산요구서**를 조정 및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인구위기대응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위기대응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다음 연도 인구위기대응사업의 시행계획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7) 2024년 9월 기준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되는 부처의 이름은 저출생대응기획부(김성원의원안 제388호, 박성민의원안 제1398호), 인구위기대응부(백해련의원안, 제623호),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서삼석의원안, 제1066호), 인구전략기획부(추경호의원안, 제1610호)로 다양함.

□ 보건복지부도 유사한 입장인바, 사전심의 제도의 목적이 저출생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제정안의 목적과 유사하고, 사전심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특별회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 또한, 저출생 관련 총괄 부처가 상기의 법률개정안을 통하여 신설된다면 제정안에서의 특별회계 관리·운용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4.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 제정안 제1조에서는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향후 특별회계에 편입될 사업이 저출생 대응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함을 밝히는 것으로 제정안의 입법 취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과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의 조항⁸⁾을 마련하여 특별회계가 무원칙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비추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나. 회계의 운용·관리(안 제2조)

- 제정안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조(회계의 운용·관리) ①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제21조⁹⁾에서는 세입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국가회계법」 제6조¹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를 규정하는 제정안 제2조는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필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명확히 위임하거나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9)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0) 「국가회계법」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다. 계정의 구분 등(안 제3조부터 및 제6조)

- 제정안 제3조부터 제6조는 특별회계가 일·가정양립계정, 돌봄계정, 모자보건계정의 3가지 계정으로 구성되며, 각 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3가지 계정 모두 저출생 이슈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세 가지 계정이 추구하는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로서 특별회계법을 제정하면서 별도로 설치할 정도로 현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목적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를 위한 계정이 우선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출생률을 끌어올려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제3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일·가정양립계정, 돌봄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일·가정양립계정의 세입·세출) ① 일·가정양립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회계의 돌봄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8조에 따른 차입금
5.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6.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일·가정양립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육아휴직 사용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
-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 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다.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2. 일·가정양립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4. 회계의 돌봄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의 전출금

제5조(돌봄계정의 세입·세출) ① 돌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회계의 일·가정양립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제8조에 따른 차입금
- 5.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6.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돌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돌봄 여건을 개선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
 - 다.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
 -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2. 돌봄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4. 회계의 일·가정양립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의 전출금

제6조(모자보건계정의 세입·세출) ① 모자보건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회계의 일·가정양립계정 및 돌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제8조에 따른 차입금
- 5.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6.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모자보건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강한 임신·출산 및 출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임신·출산 및 출생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통

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의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2. 모자보건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4. 회계의 일·가정양립계정 및 돌봄계정으로의 전출금

1) 세입

- 특별회계는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 근거법에 세입에 관한 규정을 두며, 통상적인 세입으로는 조세수입·부담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출연금·차입금, 수수료·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수입 등이 있는 바, 제정안이 신설하려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세입¹¹⁾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임.

1) 세출

- 제정안은 국가적인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육아할 수 있도록 휴직이나 복무형태적 편의를 제공하는 분야,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보육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에 대한 분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모에게 의료적 지원을 하는 분야를 각각 계정화하여 지원하고자 함.

11) 일·가정양립계정, 돌봄계정, 모자보건계정 모두 세입의 구조는 동일함.

1.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회계의 일·가정양립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8조에 따른 차입금
5.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6.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각 계정의 주요 세출 사업¹²⁾>

일·가정양립계정	돌봄계정	모자보건계정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가. <u>육아휴직 사용 문화의 정착</u>에 필요한 사업 나.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 근무제도 활성화</u>를 위한 사업 다.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돌봄 여건을 개선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가. <u>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u>을 위한 사업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u>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u>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u>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u> 다. 다양한 <u>돌봄서비스의 제공</u>을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건강한 임신·출산 및 출생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가. <u>임신·출산 및 출생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u>을 위한 사업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u>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u>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 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u>난임의 극복을 지원</u>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각 계정의 세부 세출 사업을 살펴보면,

□ 첫째, 일·가정 양립계정은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며,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편입시킬지는 향후 협의가 필요할 것임.

-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제정안이 추구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

12) 각 계정에서 공통적으로 열거한,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금은 제외한 계정 고유의 사업들임.

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사업들이 있고, 이에 대한 2024년 예산은 총 2조 8,196억 원임.

< 일·가정양립 관련 고용노동부 사업 >

정책명(지원금명)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제도내용)	'24년 예산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및 출산한 피보험 근로자 (휴가종료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2,496,830백만원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한 피보험근로자 (휴가종료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원 (기업규모에 따라 기간차등)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 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피보험 근로자 (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 80%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피보험 근로자 (단축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25.2.23부터 12세(초6) 자녀까지 사용 가능	○단축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분 일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가 출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종료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원	17,676백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출산급여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160,871백만원

정책명(지원금명)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제도내용)	'24년 예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14,391백만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기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2,376백만원
직장어린이집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운영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12,130백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장려금 및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	15,332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 다만, 고용노동부는 제정안에서의 세출 항목으로서 구체적 대상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상기의 사업들의 현행 재원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출 규정이 없다는 점¹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3)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그러나 앞에서 총괄적인 평가를 하였듯이 일·가정 양립계정은 현재의 고용노동부 사업을 다시 한번 서술하는 것일 뿐 특별회계로서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측면은 약하다고 보임. 따라서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가정 양립사업이 추가적으로 세출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돌봄계정은 돌봄 여건을 개선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며, 일·가정 양립계정의 세출과 마찬가지로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편입시킬지는 향후 협의가 필요할 것임.

-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제정안이 추구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등이 있고, 이에 대한 2024년 예산은 총 7조 9,807억 원임.

< 돌봄계정 관련 교육부 사업 >

(단위: 백만원)

사업 명	사업 내용	'24년 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중인 3~5세 대상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210,631
【일반회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2세) 및 장애아(만0~12세)전 계층 대상 보육료 지원	2,673,100

사업 명	사업 내용	'24년 예산
시간제 보육지원사업	○가정 양육(6~36개월 미만 아동) 부모 대상,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25,005
보육사업관리	○보육사업 지원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3,650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982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 등	1,314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보육진흥원 운영	21,729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 등	1,886,306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취학 전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에게 양육수당 지원	108,075
보육실태조사	○보육 관련 통계·자료 수집	69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어린이집 확충사업	○(장애)어린이집 확충, 장기 임차 및 가 지재 지원	41,654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애) 어린이집 증개축·개보수·장비비 등	7,384
어린이집 기능보강(제주)		185
어린이집 기능보강(세종)		71

*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 다만,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보육체계인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데, 이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사무 및 예산을 교육부로 일원화(복지부→교육부, '24.6.27)한 바 있음.

따라서, 특별회계(돌봄계정)의 관리·운용은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교육·보육사무는 교육부가 하는 이원화된 구조는 유보통합 취지에 반하고 효율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¹⁴⁾.

- 다만, 돌봄계정 역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특별회계 설치라는 대변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돌봄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전인적 교육에 대한 비전과 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모자보건계정은 건강한 임신·출산 및 출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본래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며,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구체적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편입시킬지는 향후 협의가 필요할 것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제정안이 추구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고위험 임신부 지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등의 사업들이 있고, 이에 대한 2024년 예산은 총 656억 2,500만 원임.

14)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5년말까지 유효한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25년말)에 대응하고 영유아 보육·교육의 중앙재원을 안정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해 '(가칭)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 중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 칙 <법률 제14395호, 2016. 12. 20.> 부칙 <법률 제1439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12. 31.>

< 모자보건계정 관련 보건복지부 사업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4년 예산
☐ 모자보건사업	24,450
▪ 임신·출산·육아 정책지원 포털 고도화 ▪ 난임부부 지원 ▪ 임신부의 날 행사 개최 및 배려 캠페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성·생식건강증진 ▪ 고위험 임신부 지원 ▪ 산후조리원 평가 및 관리 ▪ 모자보건사업 운영	510 3,576 78 228 6,997 12,171 643 247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7,154
▪ 분만취약지 지원 ▪ 소아청소년과 지원 ▪ 인공신장실 지원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 의료취약지 사업관리	12,174 1,409 700 2,777 94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4,021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네트워크 운영 ▪ 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 ▪ 사업관리비	20,631 1,500 1,254 629 7

* 자료: 보건복지부

☐ 요컨대 정부의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현재의 저출생 대응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은 현재의 재원으로 그대로 두고, 어떤 사업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로 편입시킬지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전입·전출 관련 관련

법령의 정비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저출생 대응은 범부처 사업인 만큼 향후 제정안이 마련한 3 종류의 계정에 대하여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긴급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검토를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진정 필요한 계정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중인 아동수당 지급사업¹⁵⁾과 부모급여 지원사업¹⁶⁾은 2024년 예산 기준 각 2조 1,114억원, 2조 8,886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단일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표적 사회보장사업임에도 현행 처럼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할지 이 사업들을 특별회계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계정을 별도로 신설할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5)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임.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16)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부모의 소득분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0세 영아 가정에는 월 100만원, 1세 영아 가정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 차입금, 이월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

- 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특별회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들의 체계와 유사한 구조¹⁷⁾를 갖추고 있음.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자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17) 예컨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과 조문의 내용이 동일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자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차입금)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마. 부칙

□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음.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는 향후 정부조직의 개편 가능성이 존재하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과 그 재원에 대하여 전체적인 구조적 재편 방향 등을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할 것인바, 적절한 시행일을 언제로 규정할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98